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 사기죄 성부 및 편취액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기죄의 객체인 타인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만 이 사건 각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이 사건 운영요령 제18조 제1항), 그 지급절차는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인 신청기업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위와 같은 사업비가 이 사건 각 전문기관 명의의 통합계좌로 예치되어 관리되고, 그 이후 주관기관이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별사업비의 지급을 요청하면 전문기관 측의 확인절차를 거쳐 주관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를 경유하여 해당 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시키는 결제 대행 방식으로 지급되거나(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게 되는 구조이다(전문기관인 사단법인 AC의 경우).

나) 한편 전문기관의 장으로서의 주관기관이 위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고(이 사건 운영요령 제14조 제2항 제3호),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이 사건 운영요령 제29조 제1항 제13호), 나아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문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민간부담금을 입금한 후 연구개발을 시작하도록 되어있다

(증거기록 11권 제3829쪽). 이와 같이 사업협약에서 주관기관에게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주관기관의 성실한 사업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위 사업비를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주관기관이 그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해당 간접보조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주관기관인 ㈜D 내지 ㈜D 지점(구미사업장) 등은 민간부담금을 자신 소유의 돈으로 이 사건 각 전문기관에 지급할 당시에 추후 각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사업종료 시에 정산을 거쳐 반환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수는 있으나, 자신이 그 돈의 소유자로서 이와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 이 사건 각 주관기관은 이 사건 각 사업협약에 따라 자신의 민간부담금으로 예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전문기관에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로써 그 돈은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며, 다만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은 그 민간부담금을 각 사업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함께 ㈜D 등에게 사업비 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러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장비·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이 사건 각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7124 판결의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3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그중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